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50th October 2012

▶ WHERE IS GRACE CHANG?: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2

▶ ABOUT WRITERS 2

▶ COVER STORY: 관세청에서 관세조사 사전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3

▶ FTA NEWS: 원산지 포괄확인서의 오해와 진실 4

▶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통관시 애로사항 및 주의사항 6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7

▶ CUSTOMS PRECEDENT ㊵ 8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장승희
대표 관세사

폐장이 가까운 늦은 시간에 서점에 들렸습니다. 특별히 사야 할 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서점 중앙의 진열대를 돌아보다 몇 권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중의 한 권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는 책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젊은 아가씨가 세계 각국을 돌며 만난 사람들에게 그들의 꿈을 묻고 그 답변과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온 몸을 칭칭 둘러싼 차도르 안에서 외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자유로워지는 꿈을 키우고 있는 이란의 아가씨, 이스라엘의 점령으로 고향에서 쫓겨난 지 수십 년,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눈물 짓고 있는 팔레스타인 할머니 등등 다양한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10 년 후의 신한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50 주년을 넘어 100 주년을 향해 가고 있을 모습 말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는 앙드레 말로의 명언이 있듯, 신한이 한결같이 꿈꾸고 있는 '직원이 행복한 회사, 고객에게 감동 서비스를 드리는 회사'로써 늘 새롭게,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10 월의 cover story 는 관세청의 강화된 관세조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속통관을 위하여 더욱 더욱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통관절차의 이면에는 강화된 사후 관세조사가 있습니다. 관세법 혹은 FTA 특례법에 위반되는 사항 적발을 위해 4~5 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관세조사에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이외에도, FTA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원산지 확인서에 대한 News, 중국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새로운 법령등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덧없이 가는 시간, 한 해가 아니라 연초에 세워놓은 vision 에, 목표에, 그리던 꿈에 가까이 가는 시간 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보람 있는 날들 이시기를 바랍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 He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관세청에서 관세조사 사전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김 주 미 관세사
(jm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수출입업무 및 통관
- 前 중소기업청 FTA 지원사업 컨설팅 위원

FTA News–
ASEAN 시장 FTA 로 키운다!

김 혜 정 관세사
(hj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 통관 시 애로사항 및 주의사항

임 창 환 경영학박사, 관세사
(chron21@customs.go.kr)

PROFILE
- 現)관세청 심사정책국
- 現)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부산국제우편세관장
- 前)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초빙학자 파견
- 前)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이 선 경 관세사
(sk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한국무역협회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경기 북서부 전담 관세사

Customs Precedent ㊵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 된 쟁점가격의 과세 처분

배 중 한 관세사
(jhba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공항지사 지사장
- 관세환급 T/F Team 팀장
- 관세환급 전임 강사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자문위원
- AEO T/F Team

Cover Story

관세청에서 관세조사 사전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관세청에 따르면, 09 년까지는 세액탈루 및 통관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품목을 대상으로 기획심사만을 운영해 왔으나, 2010 년 이후에는 최근 2 년간 연평균 수입액 5 천만불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정기법인심사를 실시하는 등 최근 5 년간 2,550 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1 조원대 가량의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관세청의 관세심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심사제도란 무엇이며, 심사분야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세청-최근 5 년간 관세심사로 1 조 1 천억 추징

관세청이 최근 5 년간 2,550 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1 조원대 가량의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08 년부터 올해 8 월말까지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를 통해 1 조 1 천 773 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세액추징과는 별개로 2010 년부터 일반심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 후 추징한 세액의 경우에는 오히려 추징률이 높아, 10 년도 2 천 1 억원, 11 년 2 조 310 억원, 12 년 8 월말 742 억원 등 총 2 조 3 천 53 억원에 달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09 년까지는 세액탈루 및 통관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품목을 대상으로 기획심사만을 운영해 왔으나, 2010 년 이후에는 최근 2 년간 연평균 수입액 5 천만불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정기법인심사를 실시하는 등 법인심사와 기획심사를 병행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기업심사제도란?

사후심사제도(Post Clearance Audit)

관세청은 1996 년부터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여 통관단계의 세관통제(Movement Control)는 최소화하고, 세액탈루, 법규위반 등 신고 내용 검증은 통관 이후 심사(Post Clearance Audit)를 실시하였습니다. 통관 후 기업심사는 세액심사와 통관적법성 전반에 대하여 기업단위로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심사항목은 관세평가(과세가격), 품목분류(관세율), 관세환급,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원산지표시 및 통관적법성 (통관요건 관련 57 개 법령) 등 입니다. 납세 협력 의지와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어 AEO 공인심사를 받은 우수공인업체는 컨설팅 위주의 종합심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Non-AEO 업체로 수출입규모가 큰 업체는 4~8 년 주기 정기 심사를 실시하며 고세율 품목, 위험이 높은 업체는 수시 기획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EO 공인업체	非 AEO 업체	
공인/종합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
•공인심사 실시 후 AEO 로 공인 •AEO 공인 후 1~5 년 주기 종합심사 실시 •민·관 파트너쉽	•일정 수입규모 이상 기업 •4~8 년 주기 정기심사 •AEO 편입유도	•고위험업체 •수시심사(정보분석) •조사부서 공조심사

2010 년부터 기업심사는 크게 ① AEO 인증기업에 대한 종합심사, ② 일정규모 이상 수출입업체에 대한 정기 법인심사, ③ 특정 우범업체·품목에 대한 수시 기획심사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규모가 최근 2 년간 연평균 수입액 5 천만불 이상(AEO 공인업체는 제외)의 업체를 법인심사 대상군으로 지정하고, 법인심사 대상군을 연간 수입액 1 억불을 기준으로 그룹 1(연간 수입액 1 억불이상 업체)과 그룹 2(연간 수입액 1 억불 미만 업체)로 구분하여, 그룹 1 은 4 년 주기 정기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과거 심사이력 및 업종 등을 고려하며, 그룹 2 는 위험도, 심사이력 등을 고려한 4~8 년 주기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법인심사 대상의 선정은 새로운 위험 동향과 심사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반기 단위로 선정하여 세관에 배정합니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수출입업체의 경우 AEO 공인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非 AEO 공인업체의 경우 정기적인 법인심사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기획심사에 대비 사전점검을 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관세조사의 범위

1. 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
2. 수출입에 관한 허가·승인·추천 등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
3. 품목분류(세율 및 통관요건 포함)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수량·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관세환급(소요량계산 포함)에 관한 사항
6.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에 관한 사항

8.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10. 기타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등.

☐ 관세조사의 절차

관세조사사전통지(조사개시 10 일전)→관세조사개시→관세조사진행(2 주~1 달소요)→관세조사종료→관세조사결과통지→고지서 발부

☐ 대응방안

지속적인 Monitoring

법인심사의 경우 정기적인 심사가 이루어 지는 만큼 꾸준한 Monitoring 을 통하여, 관세심사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성실한 납세 및 통관적법성 등 관련법령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부서 간 정기적인 Communication

보통의 기업조직상 회계부서, 구매부서, 물류관련부서 등 업무가 분장되어있기 때문에 관세심사시 관세관련 사안에 대한 Communication 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중요한 사안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평소 관련 부서간의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하여 관련 이슈사항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

기획심사의 경우 해당업체의 수출입규모와 동종업계의 심사방향 및 심사배경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심사분야별 관련법령 및 처벌기준이 다르므로 각 법령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마다 업무처리방식, 기업 문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원활한 관세심사진행을 위해 관세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신한관세법인은 기업의 효과적인 관세심사대응을 위하여 심사관세 전문가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Customize 된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 주 미
(jmkim@customsservice.co.kr)

FTA News

원산지 포괄 확인서의 오해와 진실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A 자동차에 10 여 년간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대전소재의 중소기업 G 전자는 얼마 전, A 자동차로부터 원산지포괄 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제조되는 자동차 부품 전량은 국내에만 공급되고 있을 뿐, 수출과는 전혀 무관하였기에, FTA 가 G 전자의 일이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공위성 안테나를 제조하는 인천소재의 중소기업 K 회사는 얼마 전, 독일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 받고, 급하게 알아본 결과, 국내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란 것을 발급받아야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포기했다. 한국의 원재료 공급업체는 20 여개가 넘고 모두 소규모 제조업체라 원산지포괄확인서란 것을 알리 만무했고, 들어봤다 한들, 발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 한-콜롬비아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총 10 개의 FTA 협정을 체결했으며, 총 45 개국을 상대로 한 협정이 현재 발효 중에 있다. 그에 따라 상대국 바이어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요청을 받은 수출업체가 다시 하위 협력업체에게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원산지포괄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고,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꼭 모든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 인지, 원산지 포괄 확인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볼 때이다.

Ⅰ. 원산지 (포괄) 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서,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 확인서 작성일부터 12 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발급한 원산지 확인서를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고 한다.

Ⅱ. 원산지(포괄)확인서, 어떻게 발급하나?

1. 작성주체

-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관련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작성절차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원산지 판정을 하게 된다.

① 부품 별 HS Code 확인
② FTA 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③ 원산지 판단
④ 원산지 확인서 작성 후 발급 요청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

※원산지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http://fta.customs.go.kr/ 자료실▷서식모음▷인증수출자▷원산지(포괄)확인서

Ⅲ. 원산지 포괄 확인서, 제대로 알고 발급해야...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행은, 다른 누구로부터의 간섭도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상위 협력업체인 수출업체로부터의 요청으로부터 준비를 하게 되므로 인원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업체로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상위 수출업체로부터의 요청을 거절할 입장도 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날인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FTA 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원산지 검증인데, 수입국 세관 등 원산지 검증의 주체기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 요건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따라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경우,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는 허위로 판명이 날 것이고, 수입업체는 FTA 가 적용된 모든 세액을 추징당할 것이며, 수입업체는 수출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 뻔하다. 또한 수출업체는 다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하위 벤더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며 책임구상을 할 것이다.

미국의회에서는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와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한-미 FTA 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고민 중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세관의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 검증이 더욱 가속화되리란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미국보다 앞서 FTA 를 체결한 EU 의 경우는 여러 차례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간접검증의 방식으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Ⅳ. 원산지 포괄 확인서, 국내공급업체로부터 모두 수취해야 하나...

그렇다면 이토록 부담스러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출물품 원재료 공급업체가 모두 발급해야 할까? 그런 경우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행업체뿐 아니라 수출업체도 지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포기해야 할 판국이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대답은 'NO' 이다.

우선 세번변경만이 유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인 경우, 원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모두 불일치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공급업체로부터 한 장의 원산지 포괄 확인서 발급도 필요가 없다. 물론 원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일치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세번이 일치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완제품 수출가액의 10%(칠레는 8%)에 불과할 경우에는 미소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간접경비 등 직접투입원재료를 제외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제품의 경우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하나도 받지 않고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투입원재료의 가격의 총액과 수출가액의 비율이 FTA 가 규정하는 부가가치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기준이라도 원재료의 가격이 높은 것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한층 신속하고 간단하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FTA, 열심히 알아보고 알뜰하게 챙기자.

바야흐로 FTA 의 전성시대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먼저 익히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넘치는 FTA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서류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관세사무소나 현재 수출입 통관 관세사에게 문의해도 좋고, 가까운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에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원산지 포괄 확인서 발급 건당 1 만원씩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고 하니, 담당 세무사무소 에 문의하여 다소나마 세액도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위 협력업체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업체라면, 홀로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 차후 검증으로부터 올 수 있는 책임구상의 위험에서도 벗어나자.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 혜 정
(hjkim@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 통관 시 애로사항 및 주의사항

□ 수출입신고 시 부실신고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

부실신고란 수량과 가격, 원산지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경우로써, 이는 해관감관, 세금징수, 무역통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경우, 해관에서는 밀수허위신고로 간주하며, 조사결과 고의가 없을 경우에는 부실신고로 처리 하지만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밀수 허위신고에 해당이 된다. 다만, 여기서 해관감관 또는 관세 포탈 등 판단 기준이 해관마다, 심지어 해관 직원마다 달리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관 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해관의 오해를 조기에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명확하고 투명한 근거자료 등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실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A, A 류 통관 기업으로 선정하여야겠다.

해관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수출입 신고전 화물분석이나 사전품목 분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관에서 수용 가능한 법규 미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진 신고하여 해명하는 자세견지가 필요하다.

□ 가공무역업체의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 발생

비준 받지 않은 국내 판매의 경우, 과태료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기업분류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허위신고에 해당될 경우 밀수에 해당되어 구속 또는 입건까지 가능하다. 또한 가공무역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수책관리를 소홀히 하여 관세, 증치세 (부가가치세), 지연이자 등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법규 숙지와 그에 따른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 품목분류에 따른 추징 또는 통관지연

품목분류는 세율결정, 무역관리 및 수출입통계 등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품목분류의 수출 환급율이 동일할 경우, 종전 품목분류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 없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다가 후에 발견되어 일시에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수출상품에 대한 품목 코드가 없어, '기타', 또는 '기타의 기타'로 분류해 해관의 품목분류 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게된 세 번이 없는 경우 해관은 세율이 높은 품목으로 대부분 분류함으로써 수출입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품목 분류 오류 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으로 수입 시 부담이 가중된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이유로 수급이 긴박한 수입 화물의 통관이 장기간 지체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해관은 종전에 품목 분류한 업무처리 관행에 있어 정정신청 접수 시 매우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부실신고에 따른 소급추징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정정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가급적 사전 품목 분류사전회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통관 대리인에 대한 의존을 지양하고, 수출입 물품의 정확한 품목 분류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고 개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입관세율 및 수출환급율 등에 따른 편법적인 품목분류는 금해야 한다. 잘못된 세번 적용으로 관세율을 낮게 적용 받았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사후에 추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과세가격 평가에 따른 추징 또는 통관지연

과세가격은 세액을 확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진실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에 대한 해관의 심사결과, 신고가격이 국내 동일물품 또는 타 수입물품 등의 거래가격보다 낮을 때 저가신고로 의심받게 되므로 신고가격에 대한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경우, 특수 관계까지 의심받게 되며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해관은 신고인에게 가격질의 통지서를 발송하고, 설명 자료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수입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입증자료는 항시 염두에 두고 사전준비와 필요 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해관 에서 신고 가격을 불인정할 경우, 이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정확한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 항상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할 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사후에 발생할 수도 있을 법정 다툼에 대비해야 하며 신고가격과 무관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관세청
심사정책국
사무관 임 창 환
(chron21@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1. 개정이유 및 배경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소비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① 배기량이 2 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세율을 현행 100 분의 8 에서 1 천분의 65 로 탄력적으로 적용

② 배기량이 2 천씨씨 이하인 승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및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00 분의 5 에서 1 천분의 35 로 탄력적으로 적용

3. 시행기간

2012 년 9 월 1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4. 적용시점

9 월 11 일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 된 제품부터 적용. 그 이전에 반출 또는 수입신고 되어 판매자가 보유한 재고품도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

5. 예외규정

정부는 10 월 25 일까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겠다고 밝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내용

1. 개정이유 및 배경

①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원산지자율 증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전「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고시」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

② 한-EU FTA 잠정발효('11.7.1), 한-미 FTA 발효('12.3.15)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2. 개정내용

①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운영에 필요한 총칙(제 1 장), 인증신청 절차(제 2 장), 인증요건 심사(3 장), 인증요건 점검 및 원산지자율증명 물품 관리(4 장)등 4 장으로 구성

② 기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던 업체별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세부 심사기준(제 9 조) 및 품목별원산지인증 수출자의 인증요건 세부심사 기준 (제 10 조)을 행정규칙으로 규정

③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서류의 보정절차 구체화(제 11 조) 및 현지확인 절차(제 12 조) 신설

④ 인증수출자의 자율점검 또는 세관장의 현지확인을 한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심사 생략(제 16 조)

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유지 여부 및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절차 신설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관할세관 구체화 및 변경절차 신설(제 14 조)
- 원산지사전검증 또는 수출검증 결과 적정으로 판정된 인증수출자는 자율점검 생략(제 16 조)

3. 시행예정일자

2012 년 10 월 10 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

1. 개정이유 및 배경

①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확대

②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시내면세점내 국산품 매장면적 확대

③ 통합물류창고의 기능 명시 및 환승전용내항기 여행객의 관리 방안 규정, 재고조사 절차의 명확화 등 보세판매장제도 운용의 효율성 제고

2. 개정내용

① 중소·중견기업에게 시내면세점 특허 확대

중소·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내면세점 신규특허기준 적용 완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2012 년 기준, 일반기업 51 개, 공기업 12 개)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② 시내면세점의 국산품매장 확대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지원 및 해외 홍보를 위해 국산품 매장을 40% 또는 825 ㎡ (250 평)이상으로 확대

* 기존 업체는 2012.12.31 까지 매장면적의 30%이상 또는 660 ㎡이상, 2013.12.31 까지 40%이상 또는 825 ㎡이상 국산품 매장 설치

③ 환승전용내항기 여행객의 출국장면세점 이용 제한

환승전용내항기를 이용하는 임시체류인에게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

3. 시행일자

2012 년 10 월 18 일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선 경
(sklee@customsservice.co.kr)

Customs Precedent ㊵ 조세심판원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영향여부

(국심 2006 관 185 2008.9.17)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스터디하였다. 각 결정례는 유사한 사례들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과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정정식 관세사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싣는다.

□ 거래사실

구매자(청구인)는 판매자로부터 스카치위스키(이하 쟁점물품)를 한국 내 독점 공급받고 있으며, 2003 년 9 월 2 일 약정하였던 독점 공급계약을 2004 년 8 월 11 일 수정하는 계약(이하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A&P 비용(Advertising & Promotion)으로 순매출액의 12%에서 16%로 4% 더 부담하는 조건으로 2001.6.1. 이후부터 적용되던 가격보다 할인 받는 계약을 체결함

이에 처분청은 2001 년 6 월 1 일 이후 적용되던 가격보다 할인 받은 것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 할인 가격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

□ 청구인의 주장

수정계약으로 합의한 가격은 환율 인상 및 내수판매 부진 등 당시 청구인이 처한 시장환경의 악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상적인 가격협상을 한 결과로서 A&P 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 등의 조건은 쟁점물품의 가격변동과 상호연관이 없다.

A&P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수정계약에 따라 집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요소 이외에 구매가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에 해당하므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 사용된 A&P 비용이 계약내용인 16%가 아니므로 '조건.사정'의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니다.

□ 처분청 의견

수정계약에는 2004.7.1. 부터 2005.6.30. 동안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A&P 사용금액 증대(순매출액의 4% 추가지출)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를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급자가 동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A&P 비용을 더 지급하는 조건에 의해 기존 수입가격보다 할인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인하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

구매자의 수입신고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보아 수정계약 이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관세법 제 30 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각호 생략)

③ 다음 가호의 1 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 31 조 내지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 판 단(결정)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연도별 변동내역과 청구법인이 사용하도록 한 A&P 의 연도별 변동내역에 의하면 수정계약으로 인하여 쟁점 수입기간 동안 수입가격이 인하되면서 A&P 의 사용비율이 인상(12%→16%)된 사실이 있지만 2001.6.1~2004.2.28 및 2005.7.1. 이후의 수입건의 경우 수입가격은 인상되었으나 A&P 는 변동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가격과 A&P 간에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A&P 비용의 인상에 영향을 받아 인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검토의견

본 결정은 계약서상 조건(A&P 비율인상)이 확인되었음에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거래의 실질을 중요시 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거래의 실제 관행을 중요시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즉, 문제의 'A&P 의 4% 추가부담'이 '조건.사정'의 결과이기는 하나 협정 주해 규정에 따라 1 방법 배제사유도 아니고, A&P 비용의 속성상 구매자의 자기계산 행위의 비용이므로 간접지급도 아니므로 인하된 수입가격은 그 자체로 거래가격의 기초인 실제지급 가격이라는 판단임.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배 중 한
(jhbae@customsservice.co.kr)

통권 50 호 | 발행일 2012 년 10 월 31 일 | 발행인 장승희 | 편집인 김연서
발행처 신한관세법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6-4
Tel 02-542-1181 Fax 02-544-9705

www.ftagateway.co.kr
www.customsservice.co.kr
AEO | SHINHAN